

행정안전부령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 관 명 (부 서 명)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과)
연 월 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공포(법률 제16880호, 2020. 1. 29.)됨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 시 수수료 부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 반영결과를 협의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한편,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 위원의 전문분야 및 위원의 수를 확대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 이행의 관리·감독 강화(안 제1조의5)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 반영결과를 협의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

나.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등록·신고 등의 업무 위탁(안 제9조~제11조)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등록 등의 신청서 제출을 행정안전부장관에서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기관 명칭 변경

다.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 전문분야 및 위원 수 확대(안 제17조의2)

재해복구사업의 사전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전문분야 및 위원 수를 7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

라. 지역안전도 진단등급 및 기준 등(안 제31조)

지역안전도 진단의 등급체계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행정
안전부 장관이 별도의 지침으로 정하도록 규정

마.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 시 수수료 부과(안 제33조)
방재관리대행자 등록 및 변경등록을 위탁 받은 수탁기관의 장이 실비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
 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5(협약 내용의 반영 결과 통보) 법 제6조제1항 및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협약 내용의 조치결과·조치계획의 통보는 별지 제2호의9서식에 따른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영 제73조제4항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수탁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수탁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수탁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17조의2제1항 중 “70명”을 “10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배수펌프장”을 “배수펌프장, 태풍·강풍·풍랑, 도시계획”으로 한다.

제27조의3제3항 중 “시·군 또는 자치구”를 “시·군·구”로 한다.

제31조 중 “영 제72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영 제72조의2제1항”으로,
 “시·군·구별로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구분하여 안전도”를 “지방자치
 단체별로 구분하여 진단”으로 한다.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수수료) 수탁기관의 장은 법 제63조의2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
 행자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실비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별지 제2호의5서식 앞쪽 중 “시행규칙 제4조의5제1항”을 “시행규칙 제4
 조의7제1항”으로 한다.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개발사업 ([]착공, []준공, []공사 중지) 통보서

(앞쪽)

사업명

사업자

사업장위치

평가 협의일

착공일 :

구 분	협의내용	개발계획 반영내용 (실시설계 등)	반영서류	비고

준공일 :

구 분	협의내용	이행결과	변경내용	변경사유

공사 중지	중지일
	공사 재개일
	사 유
	공사 중지에 따른 재해예방 조치

「자연재해대책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사업의 착공·준공·공사 중지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자

(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장관 · 관계행정기관의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뒤쪽)

개발사업 사진대지	사진설명

작성요령

1. 저감대책과 저감방안을 구분하여 작성, 구분 란은 자연재해유형(하천재해, 내수재해, 사면재해, 토사재해, 지반재해, 지진재해, 해안재해, 바람재해 등)을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2. 협의내용 란에는 개발중·개발후 협의내용을 상세히 기록합니다.
3. 착공통보시 개발계획 반영내용 란에는 협의내용 반영결과 통보서의 이행계획이 개발계획(실시설계 등)에 반영한 내용을 기록합니다.
4. 반영서류 란은 협의항목별로 설계보고서·설계도면·예산서 등(이하 “설계보고서등”이라 한다)의 반영서류명과 협의내용이 반영된 해당 서류의 페이지를 적고, 설계보고서등에 시기적으로 반영이 불가할 경우 반영 계획 서류명 및 반영 시기를 기록합니다.
5. 비고 란에는 협의내용을 반영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6. 준공통보시 구분, 협의내용은 착공통보시와 동일한 내용을 기재하고, 개발계획 반영내용(실시설계 등)에 대한 이행결과 내용을

기재합니다.

7. 착공통보시 작성한 개발계획 반영내용과 준공통보시 이행결과가 사업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상이한 경우 변경내용 및 변경사유를 기재합니다.
8. 개발사업 착공, 준공, 공사중지 통보시마다 공사 전·중·후 사진대지를 사진설명을 포함하여 작성 후 첨부하여야 합니다.
9. 개발사업 사진대지 란은 개발로 인한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통해 도출된 저감대책, 저감방안과 연관된 시설물에 대한 사진을 첨부하고 첨부 사진에 대한 설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2호의6서식 중 “시행규칙 제4조의5제2항”을 “시행규칙 제4조의7 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2호의9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호서식 앞쪽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8. 10. 31.>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 (상호 또는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설립일	
	주소 전화번호(FAX, E-mail):		
등록사항	업무 분야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업무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 정비사업계획 및 정비사업 실시계획 수립 업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평가 업무, 「급경사지 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업무, 「소하천정비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		
	☐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업무,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계획 및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실시계획 수립 업무		
	☐ 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 업무		
	☐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업무		
	☐ 1) 풍수해 부문		
	☐ 2) 지진 부문		
	☐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		
기술인력 총 () 명			
기술자격자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학력·경력자 박사() 석사() 학사() 전문학사()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방재관리대책
대행자 등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탁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무소 임대차 계약서(사무소를 임대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기술인력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나. 기술인력의 재직 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증명서, 재직증명서	수수료
업무처리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 3. 사무소가 있는 건물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4.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자연재해 대책법 시행 규칙」에 따 른 수수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업무처리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
의 업무처리자 확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 국가기술자격증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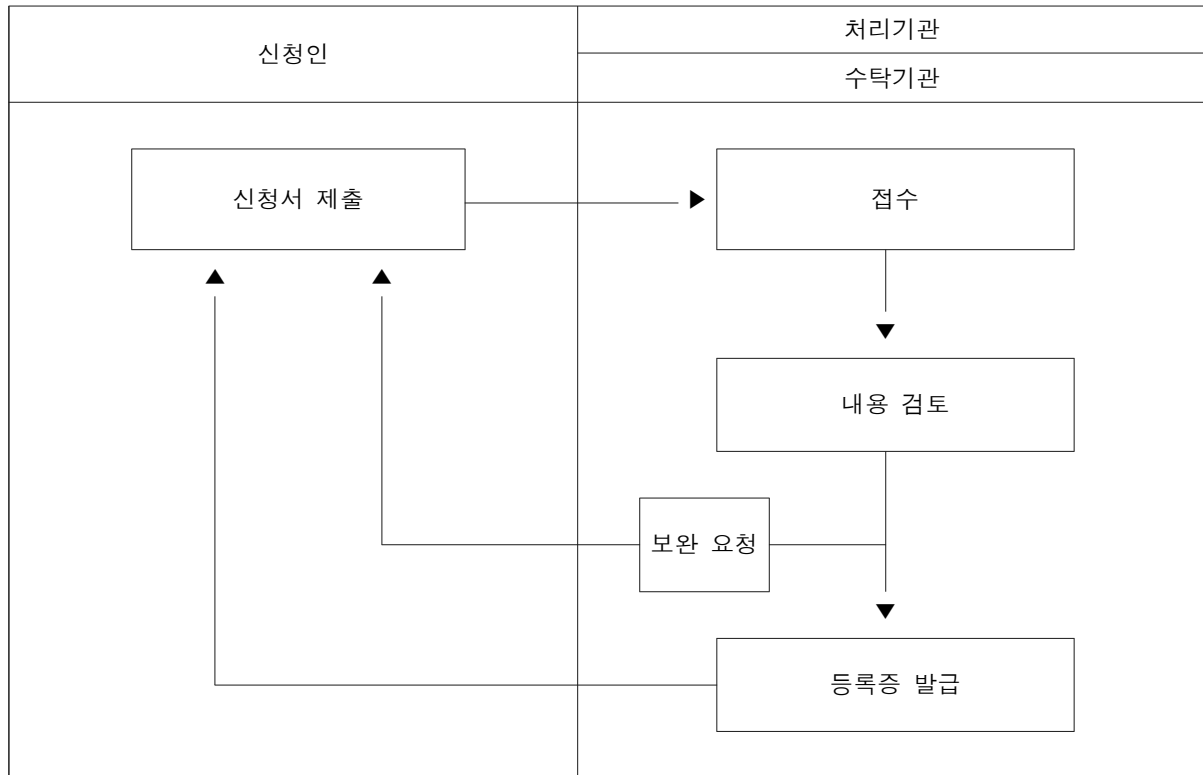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절지(80g/㎡)]

별지 제5호서식 뒤쪽을 다음과 같이 한다.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절지(80g/㎡)]

별지 제5호의2서식 앞쪽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개정 2018. 10. 31.>

(앞쪽)

등록번호 제 호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증	
명칭 또는 상호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FAX, E-mail):	
업무 분야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업무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 정비사업계획 및 정비사업 실시계획 수립 업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평가 업무,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업무, 「소하천정비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 ☐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업무,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계획 및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실시계획 수립 업무 ☐ 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 업무 ☐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업무 ☐ 1) 풍수해 부문 ☐ 2) 지진 부문 ☐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
등록 연월일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방재관리대책대행자로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수탁기관의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150g/㎡]

별지 제5호의2서식 뒤쪽을 다음과 같이 한다.

(뒤쪽)

<변경사항>

연월일	내용	확인

<행정처분사항>

연월일	내용	확인

210mm×297mm[백상지 150g/㎡]

별지 제6호서식 앞쪽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수탁기관의 장”으로 하고, 같은 앞쪽 중 “[백상지 80g/㎡]”를 “[백상지(80g/㎡) 또는 중절지(80g/㎡)]”로 하며, 같은 서식 뒤쪽을 다음과 같이 한다.

(뒤쪽)

첨부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자 등록증 2. 사무소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임대차 계약서(사무소를 임대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기술인력의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 가. 변경된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나. 변경된 기술인력의 재직 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증명서, 재직증명서	수수료
업무처리자 확인사항	1. 대행자의 명칭이나 상호 또는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확인합니다)	「자연재해 대책법 시행

나. 사업자등록증	규칙」에 따른 수수료
2. 사무소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사무소가 있는 건물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3. 기술인력의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 그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업무처리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업무처리자 확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 국가기술자격증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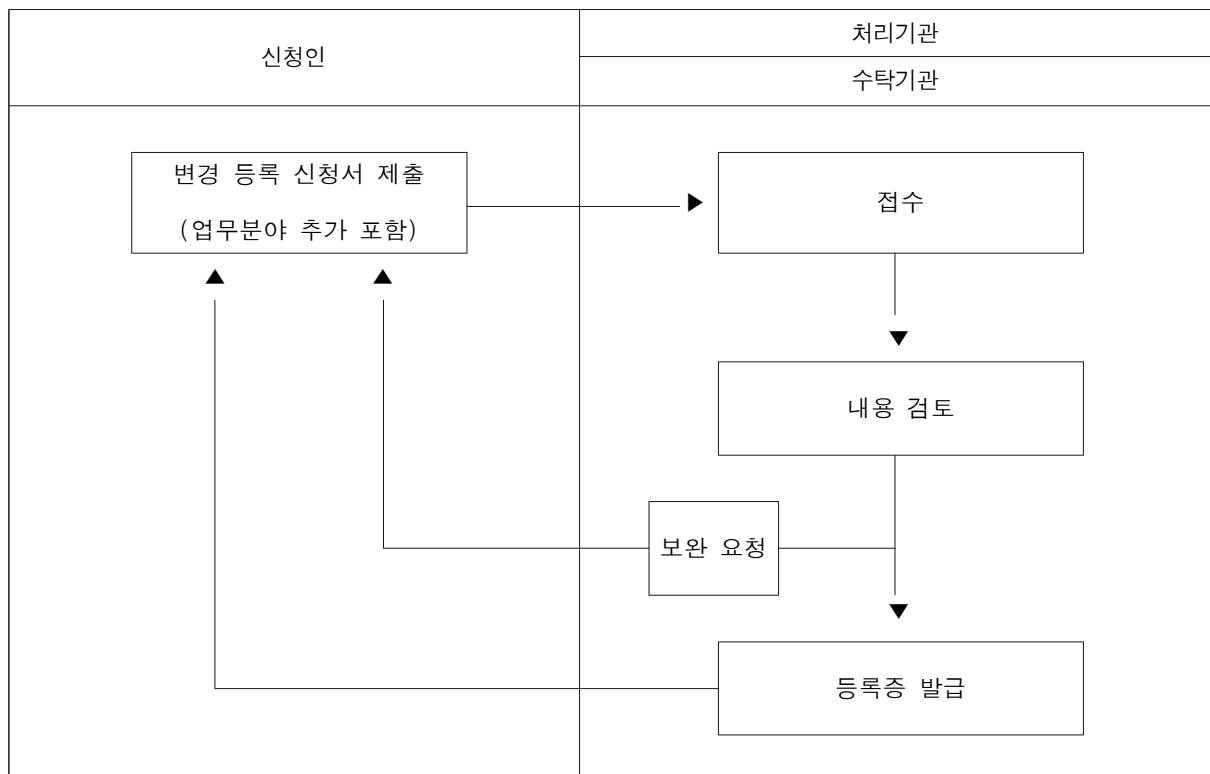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절지(80g/㎡)]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부터 제11조, 제33조 개

정 규정과 별지 제5호서식의 귀하란, 첨부서류, 뒤쪽 및 제5호의2서식 직
인란과 별지 제6호·제7호 서식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하고, 별지 제5호 서식과 제5호의2서식의 업무분야 중 “자연재해위험개
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평가”는 2021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개발사업 ([]착공, []준공, []공사 중지) 통보서

(앞쪽)

사업명

사업자

사업장위치

평가 협의일

착공일 :

구 분	협의내용	개발계획 반영내용 (실시설계 등)	반영서류	비고

준공일 :

구 분	협의내용	이행결과	변경내용	변경사유

공사
중지

중지일

공사 재개일

사 유

공사 중지에 따른 재해예방 조치

「자연재해대책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사업의 착공·준공·공사 중지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자

(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장관·관계행정기관의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개발사업 사진대지	사진설명

작성요령

1. 저감대책과 저감방안을 구분하여 작성, 구분 란은 자연재해유형(하천재해, 내수재해, 사면재해, 토사재해, 지반재해, 지진재해, 해안재해, 바람재해 등)을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2. 협의내용 란에는 개발중·개발후 협의내용을 상세히 기록합니다.
3. 착공통보시 개발계획 반영내용 란에는 협의내용 반영결과 통보서의 이행계획이 개발계획(실시설설계 등)에 반영한 내용을 기록합니다.
4. 반영서류 란은 협의항목별로 설계보고서·설계도면·예산서 등(이하 “설계보고서등”이라 한다)의 반영서류명과 협의내용이 반영된 해당 서류의 페이지를 적고, 설계보고서등에 시기적으로 반영이 불가할 경우 반영 계획 서류명 및 반영 시기를 기록합니다.
5. 비고 란에는 협의내용을 반영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6. 준공통보시 구분, 협의내용은 착공통보시와 동일한 내용을 기재하고, 개발계획 반영내용(실시설계 등)에 대한 이행결과 내용을 기재합니다.
7. 착공통보시 작성한 개발계획 반영내용과 준공통보시 이행결과가 사업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상이한 경우 변경내용 및 변경사유를 기재합니다.
8. 개발사업 착공, 준공, 공사중지 통보시마다 공사 전·중·후 사진대지를 사진설명을 포함하여 작성 후 첨부하여야 합니다.
9. 개발사업 사진대지 란은 개발로 인한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통해 도출된 저감대책, 저감방안과 연관된 시설물에 대한 사진을 첨부하고 첨부 사진에 대한 설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협의 내용 반영결과(조치결과 · 조치계획) 통보서

1. 사업개요

- 가. 사업명:
나. 위 치:
다. 사업시행자(전화번호):
라. 착공예정일(준공예정일):
마. 승인기관명:

2. 사업계획 반영 및 이행계획

<저감 대책>

구 분	협의내용	이행계획	협의내용 반영서류	비고

<저감 방안>

구 분	협의내용	이행계획	협의내용 반영서류	비고

<기타 행정사항>

■

■

<참고사항>

작성요령

- 저감대책과 저감방안을 구분하여 작성, 구분 란은 자연재해유형(하천재해, 내수재해, 사면재해, 토사재해, 지반재해, 지진재해, 해안재해, 바람재해 등)을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 협의내용 란에는 개발중 · 개발후 협의내용을 상세히 기록합니다.
- 이행계획 란에는 협의내용에 따른 자연재해유형별 저감시설의 규격 등(저감 방안의 경우 구체적인 향후 방안을 기록)을 기록 합니다.
- 협의내용 반영서류 란은 협의항목별로 설계보고서 · 설계도면 · 예산서 등(이하 “설계보고서등”이라 한다)의 반영서류명과 협의내용이 반영된 해당 서류의 페이지를 적고, 설계보고서등에 시기적으로 반영이 불가할 경우 반영 계획 서류명 및 반영 시기를 기록합니다.
- 비고 란에는 협의내용을 반영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 기타 행정사항 란에는 사업추진을 위한 관련 기관 협의 완료 사항 및 계획, 착공 전 필수 이행 사항 등을 기록 합니다.
- 참고사항 란에는 이행계획에 기재한 저감시설(임시침사지, 가배수로, 영구저류지 등)의 상세 제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방재관리대책대행자

[] 업무 휴업

[] 업무 폐업

[] 업무 재개

신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0일
------	-----	-----	------	-----

신 고 인	상 호 (명 칭)		
	등 록 번 호	등 록 일	
	대 표 자 성 명	생 년 월 일	
	사 무 소 소 재 지 (전 화 번 호:)		

휴업기간 · 폐업일 또는 업무 재개일

사유

비고

「자연재해대책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 업무 휴업, [] 업무 폐업, [] 업무 재개)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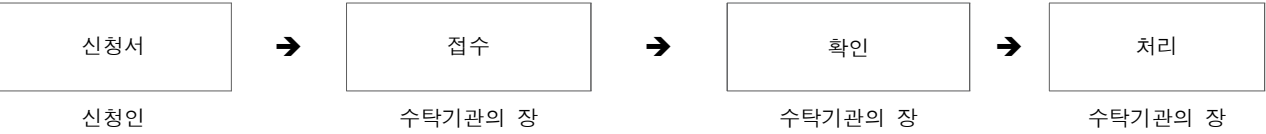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수탁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증(휴업, 폐업의 경우만 해당하며, 분실한 경우 비고란에 분실사유 기재)	수수료 없 음
------	--	------------

처 리 절 차



제 호

방재전문인력 인증서

성 명 :

생년월일 :

인증분야 :

최초 발급일 :

위 사람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8조제2항에 따른 방재분야
특수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인증시험에 합격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3항에 따라 방재전문인력 인증서를 (재)발급합니다.

년 월 일

행정안전부장관

직인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9조(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등록 신청 등) ①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u>행정안전부장관</u>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2.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u>행정안전부장관</u>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u>제1조의5(협약 내용의 반영 결과 통보) 법 제6조제1항 및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협약 내용의 조치결과 · 조치계획의 통보는 별지 제2호의9서식에 따른다.</u> 제9조(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등록 신청 등) ① ----- ----- ----- ----- ----- ----- --- <u>영 제73조제4항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장</u>----- -----. 1. 2. (현행과 같음) ② ----- -- <u>수탁기관의 장</u>----- ----- ----- ----- ---. ----- -----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영 제32조의2
제2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충족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인에
게 별지 제5호의2서식의 방재관
리대책대행자 등록증(이하 “대
행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
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제10조(대행자 변경 등록 등) ①
제9조에 따라 등록을 한 대행자
는 영 제32조의3에 따른 대행자
등록사항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
였을 때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
6호서식의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변경 등록 신청서에 대행자등록
증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
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변경 등록 신

-----.

1. ~ 4. (현행과 같음)

③ 수탁기관의 장-----

-----.

1. ~ 4. (현행과 같음)

제10조(대행자 변경 등록 등) ①

----- 수탁기관의 장
-----.

1. · 2. (현행과 같음)

② -----

청서를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변경 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대행자등록증에 적고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업무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 등) ① 대행자는 법 제41조에 따라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방재관리대책대행자 업무 휴업·폐업·재개 신고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수탁기관의 장-----

-----.

1. ~ 3. (현행과 같음)

③ 수탁기관의 장-----

-----.

제11조(업무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 등) ① -----

----- 수탁기관의 장-----
-----.

② 수탁기관의 장-----

-----.

제17조의2(사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구성하는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이하 “사전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사전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행정안전부에서 재난복구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로·교량, 하천, 산사태, 해안시설, 배수펌프장 등 분야(이하 이 조에서 “해당분야”라 한다)별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가. ~ 마. (생략)

③·④ (생략)

제17조의2(사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

----- 100명 -----
-----.

② -----

-----.

1. (현행과 같음)

2. -----

----- 배수펌프장, 태풍·강풍·풍랑, 도시계획 -----

가. ~ 마.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제27조의3(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에 대한 보상) ①·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해보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u>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u>로 정한다. 제31조(지역안전도 진단 등급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u>영 제72조의 2제1항 및 제2항</u>에 따른 지역안전도 진단 결과에 대하여 <u>시·군·구별로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구분하여 안전도 등급</u>을 부여할 수 있다. <u><신 설></u>	제27조의3(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에 대한 보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u>시·군·구</u>----- -----. 제31조(지역안전도 진단 등급 등) ----- <u>영 제72조의 2제1항</u>----- ----- <u>지방자치단체별로 구분하여 진단</u> ----- -----. 제33조(수수료) <u>수탁기관의 장은 법 제63조의2에 따라 방재관리 대책대행자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실비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u>
--	---